



제41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 추가 및
신고수리 시 부관 부가〉

■ 윤창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050호)

2024.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 추가 및 신고수리 시 부관 부가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창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3. 12. 22.
3. 회 부 일 : 2023.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특정한 경우에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부실 우려 등 금융거래 질서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한편,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과정에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거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개선사항을 요구하여야 할 경우에도 신고를 수리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없었음.

이에,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및 제7조제10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 추가 및 신고수리 시 부관 부가

□ 개정안은 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에 가상자산 관련 법령 위반 또는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신청서 등의 거짓 기재 등을 추가하고,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동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신고) ①·② (생략)	제7조(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이 법, 「 <u>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u> 」, 「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신설>	6.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신설>	7.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건전하고

④ ~ ⑨ (생략) <신설>	<u>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④ ~ ⑨ (현행과 같음) <u>⑩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u>
-------------------------------------	---

□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②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에 한정), ③ 이 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와 임원 포함), ④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제3항).¹⁾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부적정한 상황이 확인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현행법상 신고불수리 요건이 형식적 요건에 그침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신고에 대해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불명확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현재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고 있으나,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에 한계가 있음.

[실명계정 발급에도 불구하고 신고 불수리 된 사례]

- ①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A사업자는 원화마켓 진입을 위해 B은행과 실명계정 발급 계약 후 FIU에 변경신고 신청
 - ② FIU 현장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한 특정금융정보법상 위반사항(고객확인 의무 위반, 미확인고객 거래제한 의무위반 등)이 적발되어 제재처분
 - ③ FIU는 A사업자에 대해 원화마켓에 진입할만한 AML(Anti-Money Laundry;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불수리 통보
 -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사업자가 충분한 AML역량을 갖추었는지, 가상자산시장 거래질서 저해 소지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사업자는 신고 불수리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자료: 금융위원회)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를 추가하고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임.

○ 2023년 7월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2024년 7월 19일에 예정되어 있고, 올해 9월 이후 기존 가상자산사업자(37개사)중 대부분인 33개사에 대한 갱신신고 시점이 도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질서 저해 사례 등을 감안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조속히 보완하고, 신고수리 시 일정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내용별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3년 말 기준)]

구 분	서비스명	법인명	신고수리일
가상 자산 거래 업자 (27)	업비트	두나무 주식회사	2021.10.06.
	코빗	주식회사 코빗	2021.10.20.
	코인원	주식회사 코인원	2021.11.25.
	빗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2021.12.02.
	플라이빗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	2021.12.01.
	지닥(GDAC)	주식회사 피어테크	2021.11.29.
	고팍스	주식회사 스트리미	2021.12.09.
	BTX	차일들리 주식회사	2021.12.09.
	프로비트	오션스 주식회사	2021.12.09.
	포블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2021.12.21.
	후오비코리아	후오비 주식회사	2021.12.21.
	코어다스	(주)코어다스	2021.12.17.
	플랫타익스체인지	주식회사 플랫타이엑스	2021.12.23.
	한빛코	주식회사 한빛코코리아	2021.12.23.
	비블록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	2021.12.23.
	비트레이드	주식회사 블록체인컴퍼니	2021.12.23.
	오케이비트(OK-BIT)	주식회사 포리스탁스코리아 리미티드	2021.12.30.

	빗크몬	주식회사 골든퓨처스	2021.12.30.
	프라뱅	주식회사 프라뱅	2021.12.30.
	코인엔코인	(주)코엔코코리아	2021.12.30.
	보라비트	주식회사 벵코	2021.12.30.
	캐서레스트	주식회사 뉴링크	2022.01.04.
	텐앤티	(주)텐앤티	2022.01.04.
	에이프로빗	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	2022.01.04.
	오아시스거래소	(주)가디언홀딩스	2022.02.10.
	큐비트(주)	큐비트(주)	2022.02.10.
	코인빗	주식회사 액시아소프트	2022.09.01.
기타 지갑 보관· 관리 업자 (10)	코다(KODA)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에셋	2021.12.17.
	케이닥(KDAC)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	2021.12.17.
	오하이월렛	(주)핵슬란트	2021.12.30.
	마이키피월렛	(주)씨피랩스	2022.01.04.
	하이퍼리즘	주식회사 하이퍼리즘	2022.01.07.
	카르도	(주)카르도	2022.02.10.
	텔리오	(주)텔리오	2022.02.12.
	페이코인(Paycoin)	PayProtocol AG	2022.04.22.
	베이직리서치	주식회사 마인드시프트	2022.06.27.
	인피닛블록	(주)인피닛블록	2023.08.07.

 : '24년내 신고갱신 신청 필요 사업자

(※ 유효기간 만료(신고수리일로부터 3년) 45일 전까지 갱신 신청 필요)

(자료: 금융위원회)

☐ 첫째, 가상자산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로 가상자산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를 추가하는 것(안 제7조제3항제5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먼저 ‘가상자산 관련 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제7조제3항제3호)²⁾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상자산 법령 위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형사처벌이 없었더라도 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2024년 7월 시행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위반행위³⁾를 한 자 등에 대해서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장 진입과 동시에 법 위반 상태가 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① 현행법의 ‘금융관련 법률’과 개정안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의 범위가 중첩적이고, ②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의 의미가 신고 시점에 법 위반상태에 있는 자인지, 신고 이전에 관련 법령을 1회 이상 위반한 자 모두를 포함하는지 등 해석 기준이 모호하므로 법 위반 시점으로부터의 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③ 가상자산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자가 아닌, 위반 자체를 신고 불수리 사유로 규정함에 따라 신고요건이 과도하게 해석될 우려⁴⁾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법률 제1956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기록을 생성·보존 또는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보고한 자
8.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검사·조사·명령·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예컨대,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금융투자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규로 진입하기 위해 신고하려는 경우, 개정안 제7조제3항제5호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가 되어 신고불수리 요건에 해당하게 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

○ 다음으로, ‘법령 위반 우려’와 관련하여서는, 신규사업자가 신고내용대로 사업을 개시하면 가상자산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등을 신고불수리 요건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법령을 위반할 우려”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함에 따라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일의적으로 확정되기 어려워 수범자가 신고불수리 요건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고, 현행법상 가상자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진입규제인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허가기준보다 그 요건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⁵⁾ 법령 위반 우려의 구체성 확보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⁶⁾

□ 둘째, 그 밖에 신고불수리에 해당하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안 제7조제3항제7호)과 관련하여서는, 각 호에 시장질서 저해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가상자산시장의 신고불수리 사유를 모두 열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외에 이에 준하는 유사한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그 ‘목적’만을 한정하고 있는데, 수리 여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포괄위

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5)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2022)에 따르면 허가제의 경우 행정기관이 허가기준을 심사할 때 판단의 여지가 많은 데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기준은 허가제의 허가기준보다 더 구체적·객관적으로 정해야 하고, 신고제의 경우 허가 제도를 완화한 취지에 맞게 요건에 맞으면 자동적으로 수리될 정도로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신고기준을 정해야 함.

6)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위반할 우려’라는 표현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의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측 가능한 사유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이 법과 유사하게 신고불수리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열거된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⁷⁾하는 방식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부관 부과(안 제7조제10항)와 관련하여서는, 가상자산업은 업계 및 글로벌 규제 동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참고로,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 거래 중개)와 유사한 성격의 투자 중개업 인가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은행·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도 인·허가 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 법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제2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9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고수리 및 인·허가 시 조건부가 유사 입법례]

구분	입법례
신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u>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u>
인·허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u>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u>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u>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u>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u>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u>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u>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u>

□ 개정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성격·사업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불수리 사유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신고불수리 사유를 규정하고, 신고수리 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8